

## [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선임직 이사로 공개모집합니다.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.

2025년 9월 22일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### 1 임용 개요

- 임용직위 : 선임직 이사
- 선발인원 : 2명
- 근무형태 : 비상근
- 임 기 : 임용일로부터 3년
- 주요업무 :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
- 보 수 : 수당지급(진흥원 규정에 따름)

## 2 자격요건

### □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- 경제 관련 기관에서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이상의 근무 경력자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근무 경력자
-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노무사, 기술사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한 자
-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고, 상기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

## 3 직무수행요건

### □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

- 경제 및 경영, 사회문화 등에 대한 일반적인 식견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및 금융, 산업, 경상북도 정책 변화 등에 대한 풍부한 식견
- 진흥원의 경제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
- 신용보증 등 진흥원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

### □ 직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 능력

-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행의지
-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 지향적인 가치관
-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
-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

## □ 기본윤리 및 책임감

- 청렴성, 도덕성, 준법성 등의 건전한 윤리의식
-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한 의무이행 노력
-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 능력
- 이사회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하려는 의지

## □ 대외업무 추진 능력

-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협상능력
- 진흥원발전을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연대능력
- 유관기관과의 교섭 및 관계발전을 통한 진흥원 성장 추진능력

## 4 결격사유

### □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
-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진흥원 정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
**<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>, <진흥원 정관 제10조>**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**<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>**

- ④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- 1. 공공기관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 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 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  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   - 마. <삭제>
    - 바. <삭제>
   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  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  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 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 -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 -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-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-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 -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-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-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##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

- **공고기간** : 2025. 9. 22.(월) ~ 2025. 10. 10.(금). 15일 이상
- **제출기간** : 2025. 9. 22.(월) ~ 2025. 10. 10.(금). 18:00
- **제출장소**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(☎ 054-470-8518)  
(우)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 92-30), 3층
- **제출방법** : 인터넷 접수(e-mail : leejr92@gepa.kr), 방문,  
등기우편(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 중 택 1
  - ※ 방문접수는 휴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(09:00~18:00, 대리접수 가능)
  - ※ 우편접수 시 도착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

### □ 제출서류

- 응시지원서 1부
- 직무수행계획서 1부
- 자기소개서 1부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경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 (해당자에 한함)
- 기본증명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4대보험(택1) 자격득실 확인서(경력증명과 득실기간 일치) 1부
-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

##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·발표

### □ (1차) 서류심사 : 2025. 10. 24.(금) 예정 (\*변동 가능)

- 심사 주관 : 임원추천위원회
- 심사 대상 : 응시자 전원
- 심사 내용 :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요건 평가
- 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

※ 선임직 이사의 경우 면접전형 생략

### □ (2차) 이사회 추천으로 경북도지사가 임명

- 주관 : 진흥원 이사회
- 심사 대상 :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한 후보자
- 심사 절차 : 이사회 추천을 통해 경북도지사가 최종 임명

### □ 최종 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

## 7 기타 유의사항

### □ 재공고·변경공고

-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,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,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
- ※ 재공고시 최초 공고에 응모한 자는 재응모를 하지 않더라도 공모를 완료한 것으로 함.

-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
-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음

## □ 선임직 이사 후보자 추천

- 추천위원회는 진흥원에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.추천
- 추천위원회가 선임직 이사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하여 이사회로 통보 하고, 이사회가 추천을 거친 후 이사장은 도지사에게 임명을 요청

## □ 기타사항

-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 후 지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, 응시지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모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임
- 지원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정 양식에 의해서만 접수
  - ※ 홈페이지(www.gepa.kr)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
-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거나 임용되더라도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불합격한 응모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함
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경상북도 및 진흥원 홈페이지([www.gepa.kr](http://www.gepa.kr))를 통해 공고함
-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으로 문의 (☎ 054-470-8518)

## **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**